

-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

# 제 안 설 명 서

2025. 2.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어르신장애인과]

# 제안 설명서

설 명 자: 어르신장애인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 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 「사회복지사업법」,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먼저, 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은 진천동 493-7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5,029.86㎡, 직원 17명 정도로 2025년 9~10월경 개관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대강당, 프로그램실, 스크린파크골프 연습장,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이 있습니다.

- 민간위탁 내용은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지침 및 조례 등에 근거한 사무 등이며, 기간은 2025. 8.~2030. 8월로 5년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사업비는 총 983백만원 정도로 시비 497백만원, 구비 486백만원입니다.

**□ 향후 계획과 운영주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5. 4.~5월중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5.~6월중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 6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달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00925017
----------	----------

제출일자: 2025. 2. 26.

제출자: 달서구청장  
(어르신장애인과장)

## 1. 제안이유

-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 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 「사회복지사업법」,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7조

○ 필요성

-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 지식과 인력 활용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 도모

다. 위탁사무 내용: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사업 전반

- 노인종합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
-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지침 및 조례 등에 근거한 사무
- 기타 지역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라.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사 업 비 (1년 기준)	운영 인력	비 고 (개관일)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진천동 493-7번지 일원(진천동)	지하1, 지상3층 (연면적 5,029.86㎡)	983백만원 정도 (사비 497, 구비 486)	17명 (예정)	2025. 9. (예정)

마. 민간위탁기간: 5년(2025. 8.~2030. 8.)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선정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적절
- 후원금 및 다양한 민간재원 조달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효율성 제고
-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용이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참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 붙임 2 참조

다.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추진 계획: 붙임 3 참조

라. 향후 추진일정

-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및 접수 : 4~5월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5~6월
- 선정결과 공고 : 6월
- 위탁계약 체결 등 : 6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운영)**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복지관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및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기준	검토내용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다양한 자원 조달,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에 효과적</li> <li>· 위탁 운영업체의 운영 관련(서비스, 회원 만족도 조사 등) 점검 필요</li> </ul>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법령 및 제반규정에 의해 운영되기에 노인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li> </ul>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운영방식은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부담</li> <li>· 민간위탁운영방식은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 활용 등 자체적으로 다양한 자원조달이 가능함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효과적</li> </ul>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운영방식은 정기적인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성 결여</li> <li>· 민간위탁운영방식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li> </ul>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운영방식은 자체적으로 성과측정의 어려움이 있고 민간위탁운영방식은 위탁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활용할 측정지표가 필요</li> <li>· 위탁운영방식은 외부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성과측정이 용이</li> </ul>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지도·점검·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li> </ul>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화된 민간서비스 공급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민간의 우수인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운영 가능</li> <li>· 이용자 측면에서 민간기관의 경쟁은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li> </ul>

### 붙임 3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추진 계획

-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

##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 ❖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공익·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I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II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투명성 제고
-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심의로 질적 수준 제고

### III 위탁개요

#### 시설현황

(단위: 백만원)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사 업 비 (1년 기준)	운영 인력	비 고 (개관일)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진천동 493-7번지 일원(진천동)	지하1, 지상3층 (연면적 5,029.86㎡)	983백만원 정도 (사비 497, 구비 486)	17명 (예정)	2025. 9. (예정)

## □ 층별 주요시설

층 별	연면적(㎡)	주 요 용 도
계	5,029.86	
지상3층	1,175.67	실버식당,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당구장
지상2층	683.97	프로그램실, 장기바둑실, 서예실, 건강증진실, 자원봉사실, 통신실
지상1층	1,270.26	사무실, 취업상담실, 프로그램실, 대강당, 북카페, 관장실, 주차장(23면)
지하1층	1,899.96	문서고, 창고, 재활용창고,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주차장(49면)

※ 층별 주요 용도는 수탁법인과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기 간: 2025. 8.~2030. 8.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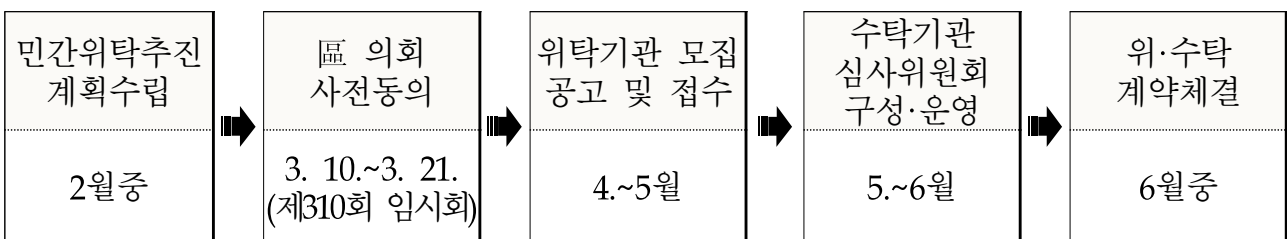
※ 「사업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 □ 대상사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사업 전반

-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
-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지침 및 조례 등에 근거한 사무
- 기타 지역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 □ 추진절차



## □ 신청자격

-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정관에 노인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이나 주요 사업 내용 포함)
-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 보조금 지원 외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을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선정 무효

## IV 세부추진계획

### □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 기 간: 2024. 12. 18.(수)~12. 26.(목)
- 방 법: 정책자문위원회 복지·문화·보건 분과 위원 서면자문 검토
- 검토결과: 【붙임 1】

### □ 區 의회 민간위탁 사전 동의

-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 기 간: 2025. 3. 10.~3. 21.(제310회 임시회 예정)
- 내 용: 민간위탁 추진 區 의회 사전 동의

### □ 모집공고 및 접수

- 모집방법: 공개모집 ※ 공고문안 【붙임 2】
- 공고기간: 4.~5월(15일간)
- 접수기간: 5월(공고기간 종료 후 5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모집결과 신청법인이 없거나, 1개 법인만 신청하였을 경우 재공고: 7일간
- 접 수 처: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1층, 노인정책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
  - \* 우편·택배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5월중 / 장소 미정
- 내 용
  - 시설 현황, 위탁업무 및 추진절차 등 전반적인 상황
  - 시설 운영 방안 및 요청사항 등 설명, 질의응답 등
  - ※ 신청서 제출 법인은 사업설명회 필히 참석
  - ※ 참석의사 사전 전달 요망(법인명, 참석인원 등) 전자우편 또는 유선전화

##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위원회 구성

-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 구성: 9인 이내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관련 업무 공무원
  -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시기: 5~6월중
- 위원임기: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촉

### 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6월중 / 장소 미정
- 참석대상: 심사위원
- 내 용: 접수된 수탁기관 심사·선정

###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
  - ▶ (1차) 사전 서류검토 ※ 구비서류 확인, 정량평가 실시
  - ▶ (2차) 당일 현장심사: 신청 법인의 사업계획 등 설명, 질의응답 등

○ 심사기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종합적 평가 【붙임 3】

○ 심사결정방법

- 심사위원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개별심사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 합산 평균이 높은 법인
- 단독 신청의 경우, 심사배점표에 따른 심사에 따라 평균 70점 이상

○ 결정통지: 심사결과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 위·수탁 계약체결 ▷ 별도계획 수립

○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 일 시: 6월중

○ 주요내용: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액 및 계약위반 시 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V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5. 2. 24.(월) 限

○ 모집공고 및 접수: 2025. 4.~5월

○ 사업설명회 개최: 2025. 5월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025. 5.~6월

○ 위탁계약 체결: 2025. 6월